

2024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



응시자격기준은 시도 소방본부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자격(면허), 인정 실무경력 등 세부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

시도별	전화번호	주소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94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http://119gosi.kr)
서울소방학교 인재채용팀	02-2106-3621~3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https://fire.seoul.go.kr/school)
부산 소방행정과	051-760-3023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216 (https://119.busan.go.kr/119examinfo)
대구 소방행정과	053-350-40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49길 30, 2층 소방행정과 (http://www.daegu.go.kr/119)
인천 소방행정과	032-870-3012~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https://www.incheon.go.kr/119/index)
광주 소방행정과	062-613-8022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https://www.gwangju.go.kr/)
대전 소방행정과	042-270-619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https://www.daejeon.go.kr/dj119)
울산 소방행정과	052-229-4523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2별관 3층 소방행정과 (https://fire.ulsan.go.kr/)
세종 소방행정과	044-300-801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618호 (https://www.sejong.go.kr/fire/index.do)
경기도 인사담당관	031-230-2923~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86 별관4층 인사담당관 (https://119.gg.go.kr/)
강원 소방행정과	033-249-5104, 5114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신관1층 (https://fire.gwd.go.kr/fire/partici/parti_recruitment)
충북 소방행정과	043-220-4824	충북 청주시 청원구 밀레니엄1로 57 (https://cb119.chungbuk.go.kr)
충남 소방행정과	041-635-556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http://www.cn119.go.kr/index.cn119)
전북 소방행정과	063-280-38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16층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 (https://www.sobang.kr/index.sobang)
전남 소방교육과	061-860-4726	전남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43 (https://www.jnsobang.go.kr/jnsobang/commu/test/)
경북 소방행정과	054-880-6155 054-880-6152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https://www.gb.go.kr/Main/open_contents/section/exam_info/index.html)
경남 소방행정과	055-211-53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
제주 소방정책과	064-710-35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9길 22 (http://www.jeju.go.kr/119/notice/exam.htm)
창원 소방정책과	055-548-9316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https://www.changwon.go.kr/119/)

분류번호	01	채용분야	건축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 업무**
- 청사 건립(공사감독), 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건축 관련 업무
 - 청사 신축 및 개·보수 지도 감독 등
 - 소방청사 설계용역,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보강 등에 관한 업무
 - 화재안전조사, 위반건축물 확인,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점검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본자격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기타자격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① 자격증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정 실무경력

-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 내용의 "나. 건축공사업" 또는 "다. 토목건축공사업"에서 근무한 경력
- ② 「건축사법」제4조(설계 또는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위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
- 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5] 전문분야 "설계·사업관리"에서 "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 중 "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술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④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구.소방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건축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경북) 청사 신축(공사감독) 및 관리부서에서 근무

분류번호	02	채용분야	구급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	○	○	○	○	○	○	○	○	○	○	○	○	○	○	○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 재난현장에서 다수사상자 중증도 분류와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항공구급대원, 안전체험관 교관, 교육대 교관, 구급 행정업무 수행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¹⁾ 또는 간호업무²⁾ 경력이 있는 사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p> <p>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p> </div> <p>○ 자격증: (기본자격)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기타자격) 의사면허증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p>○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p> <p>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p> <p>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p> <p>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p> <p>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p> <p>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p> <p>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p> <p>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¹⁾·사회복무요원²⁾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p> <p>1)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지6(의무소방 복무확인 증명서) 제출(소속기관의 장이 발급)</p> <p>2) 사회복무요원포털 접속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출력 후 제출</p> <p>⑨ 군(병·부사관·장교) 의무 관련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필요)</p> <p>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div>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03	채용분야	구급(항공)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및 응급처치 지도 ○ 재난현장에서 다수사상자 중증도 분류와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 항공구급대원, 안전체험관 교관, 교육대 교관, 구급 행정업무 수행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¹⁾ 또는 간호업무²⁾ 경력이 있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2)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기본자격) 간호사 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기타자격) 의사면허증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②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따른 이송업체 근무한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¹⁾·사회복무요원²⁾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무소방대관리규칙 별지6(의무소방 복무확인 증명서) 제출(소속기관의 장이 발급) 2) 사회복무요원포털 접속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출력 후 제출 ⑨ 군(병·부사관·장교) 의무 관련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필요)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div>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119항공대 항공구급 전담인력 배치	

분류번호	04	채용분야	구조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	○	○	○	○			○		○	○	○	○	○	○	○	○		○	
학위 ③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업무 ○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 소방(구조) 장비 관리, 운용 및 물품관리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특수부대 근무경력 중 임관을 위한 교육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특수부대 인정 범위 (육군) 육군특전사, 정보사, 강습대대, 신속대응사단·여단(구.특공여단),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수색대대, 정보중대(구.연대수색중대), 특공연대·대대(35특수임무대대 포함), 제1산악여단, 사단 기동대대, 여단 기동중대, 기계화사단정보대대지상정찰중대 (공군) 공군공정통제사(CCT), 공군항공구조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해군) 해군정보부대(UDU), 군사경찰특수임무반(구.헌병특수임무대), 해군특수전전단[구.해군특수전여단(UDT)+구.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대) 해병대 수색부대(구.해병특수수색대), 해병대 유격대대, 해병대 기습대대, 해병대 공정대대, 해병대 지상정찰소대, 해병대 저격반,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 (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1·24특임대대 (기타 특수부대) 그 외 특수부대 근무경력자 ○ 특수부대 근무경력 인정 제출서류 - 군별 특수부대 복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구분</td> <td>제출서류</td> <td>대표 발급처</td> <td>각 군 발급처</td> </tr> <tr> <td>육군</td> <td rowspan="2">군경력증명서</td> <td rowspan="2">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td> <td>육군본부 병적민원과</td> </tr> <tr> <td>해군</td> <td>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td> </tr> <tr> <td>공군</td> <td rowspan="2">군경력증명서</td> <td rowspan="2">-</td> <td>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td> </tr> <tr> <td>해병대</td> <td>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td> </tr> <tr> <td></td> <td>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td> <td></td> <td>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td> </tr> </table>	구분	제출서류	대표 발급처	각 군 발급처	육군	군경력증명서	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	육군본부 병적민원과	해군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	공군	군경력증명서	-	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	해병대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
구분	제출서류	대표 발급처	각 군 발급처																		
육군	군경력증명서	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	육군본부 병적민원과																		
해군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																		
공군	군경력증명서	-	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																		
해병대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																		
③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05	채용분야	구조(항공)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
학위 ③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업무 ○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른 각종 재난 현장에서의 소방활동 ○ 소방(구조) 장비 관리, 운용 및 물품관리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부대 근무경력 중 임관을 위한 교육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특수부대 인정 범위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육군) 육군특전사, 정보사, 강습대대, 신속대응사단·여단(구.특공여단),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 수색대대, 정보중대(구.연대수색중대), 특공연대·대대(35특수임무대대 포함), 제1산악여단, 사단 기동대대, 여단 기동중대, 기계화사단정보대대지상정찰중대</p> <p>(공군) 공군공정통제사(CCT), 공군항공구조사, 군사경찰특수임무대(구.헌병특수임무대)</p> <p>(해군) 해군정보부대(UDU), 군사경찰특수임무반(구.헌병특수임무대), 해군특수전전단[구.해군특수전여단(UDT)+구.해군해난구조대(SSU)]</p> <p>(해병대) 해병대 수색부대(구.해병특수수색대), 해병대 유격대대, 해병대 기습대대, 해병대 공정대대, 해병대 지상정찰소대, 해병대 저격반, 해병대 군사경찰특별경호대</p> <p>(국방부 직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21·24특임대대</p> <p>(기타 특수부대) 그 외 특수부대 근무경력자</p> </div> ○ 특수부대 근무경력 인정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별 특수부대 복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제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제출서류</th> <th>대표 발급처</th> <th>각 군 발급처</th> </tr> </thead> <tbody> <tr> <td>육군</td> <td rowspan="3">군경력증명서</td> <td rowspan="3">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td> <td>육군본부 병적민원과</td> </tr> <tr> <td>해군</td> <td>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td> </tr> <tr> <td>공군</td> <td>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td> </tr> <tr> <td>해병대</td> <td>군경력증명서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td> <td>-</td> <td>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td> </tr> </tbody> </table> 			구분	제출서류	대표 발급처	각 군 발급처	육군	군경력증명서	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	육군본부 병적민원과	해군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	해병대	군경력증명서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
구분	제출서류	대표 발급처	각 군 발급처																
육군	군경력증명서	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	육군본부 병적민원과																
해군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																
공군			역사기록관리단 인사자료관리과																
해병대	군경력증명서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 해병대사령부 일자리정책과																
③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항공대 항공구조 전담인력 배치 																		

분류번호	06	채용분야	소방(자격)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화재안전조사 및 자체 점검 관련 업무
 -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접수 및 완비증명서 발급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자격증</p> <table border="1"> <tr> <td>기본자격</td> <td>산업기사</td> <td>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td> </tr> <tr> <td rowspan="3">기타자격</td> <td>기술사</td> <td>소방</td> </tr> <tr> <td>관리사</td> <td>소방시설</td> </tr> <tr> <td>기사</td> <td>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tr> <td>▶ 인정 실무경력</td> </tr> <tr> <td>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td> </tr> <tr> <td>※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kfma.kr/systemMain.do)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td> </tr> <tr> <td>②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별표1) 1. 소방시설설계업, 2. 소방시설공사업, 3.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 중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td> </tr> <tr> <td>※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http://fdept.ekffa.or.kr/main.do)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td> </tr> <tr> <td>③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구.소방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소방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td> </tr> </table>	기본자격	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기타자격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인정 실무경력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kfma.kr/systemMain.do)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②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별표1) 1. 소방시설설계업, 2. 소방시설공사업, 3.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 중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http://fdept.ekffa.or.kr/main.do)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③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구.소방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소방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기본자격	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기타자격	기술사	소방															
	관리사	소방시설															
	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 인정 실무경력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방시설 관리업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종합정보시스템(https://www.kfma.kr/systemMain.do)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② 「소방시설공사법 시행령」(별표1) 1. 소방시설설계업, 2. 소방시설공사업, 3.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한 업체 중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고 근무한 경력																	
※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시설업 등록시스템(http://fdept.ekffa.or.kr/main.do)에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																	
③ 소방관서 화재안전조사(구.소방특별조사) 근무경력 중 경력직 “소방분야” 중 조사인력(보조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07	채용분야	소방관련학과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학위 ③		○	○	○		○	○	○	○	○	○	○	○	○	○				○	○

- 주요 업무**
- 화재안전조사 및 자체 점검 관련 업무
 - 건축허가 동의 및 완공증명서 발급 관련 업무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접수 및 완비증명서 발급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 해당없음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의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전문 포함)학위를 취득한 사람 ▪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소방안전공학과·소방방재학과·소방행정학과·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p>※ 소방관련학과 인정현황은 '참고자료 및 서식' 참고</p>
비고	

분류번호	08	채용분야	소방정(기관사)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소방정 운영과 관리, 해상 인명구조 활동 등
 - 소방선박 기관 및 관련 장비, 물품 등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
 - 소방선박의 정박, 계류, 보급 관련 업무 및 연료 등 유류 저장·관리 업무
 - 해수 또는 내수상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업무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사 면허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에 한함)
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③ 학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비고	

분 류 번 호	09	채 용 분 야	소방정(항해사)
시 험 절 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 격 증 ①		◎													◎				◎
경 력 ②																			
학 위 ③																			

주요 업무

- 수상에서의 화재진화, 구조, 구급활동에 관한 사항
- 소방선박 점검·정비 및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선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시도에서 보유(도입)하고 있는 선박의 규모에 따라 면허등급을 다르게 정하여 채용하오니 아래 표의 응시자격을 확인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서울</td> <td> <p>■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u>어선에 의한 승무경력</u>은 제외)</p> </td> </tr>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전남 창원</td> <td> <p>■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u>어선에 의한 승무경력</u>은 제외)</p> </td> </tr> </table>	서울	<p>■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u>어선에 의한 승무경력</u>은 제외)</p>	전남 창원	<p>■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u>어선에 의한 승무경력</u>은 제외)</p>
	서울	<p>■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u>어선에 의한 승무경력</u>은 제외)</p>			
전남 창원	<p>■ 「선박직원법」제4조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항해사 면허(「선박직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한정면허 중 상선면허에 한함)를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p>※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 증명되어야 함 (1~4급에 해당하는 승무경력 중 어선법 제2조1호에 따른 <u>어선에 의한 승무경력</u>은 제외)</p>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10	채용분야	심리상담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경력 ②				◎													◎	◎		
학위 ③																				

- 주요업무**
- 현장활동 소방대원 등 심리지원 업무
 -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업무
 -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구축에 관한 사항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 해당없음
② 경력	<p>■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위에 관련 있는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해당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p> <p>※ 근무(연구)경력은 심리상담 연구·조사·분석,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자문 실무경력에 한함</p> <p>*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알리오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클린아이 누리집에서 확인)</p>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11	채용분야	안전관리(화재조사)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 업무

- 소방서 화재조사전담부서 배치,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 업무
- 기계, 전기·전자, 안전관리 분야 화재 원인 규명 업무
- 화재조사 장비의 활용과 유지·관리 업무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u>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p> <p>○ 자격증: 아래의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사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기계분야</td> <td>기계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td> </tr> <tr> <td>전기·전자분야</td> <td>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자기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td> </tr> <tr> <td>안전관리분야</td> <td>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td> </tr> </table>	기계분야	기계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전자분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자기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안전관리분야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기계분야	기계기술사, 기계가공기능장, 기계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전자분야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자기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자기사						
안전관리분야	가스기술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p>▶ 인정 실무경력</p> <p>① (기계) 기계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CAE(CAD 포함), 응용역학, 유체공학 관련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의 근무경력</p> <p>② (전기·전자) 전기·전자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전기·전자회로의 개발(응용), 전기·전자기기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의 근무경력</p> <p>③ (안전관리)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 또는 가스기기·설비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의 근무경력</p> </td> </tr> </table>	<p>▶ 인정 실무경력</p> <p>① (기계) 기계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CAE(CAD 포함), 응용역학, 유체공학 관련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의 근무경력</p> <p>② (전기·전자) 전기·전자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전기·전자회로의 개발(응용), 전기·전자기기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의 근무경력</p> <p>③ (안전관리)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 또는 가스기기·설비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의 근무경력</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기계) 기계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CAE(CAD 포함), 응용역학, 유체공학 관련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의 근무경력</p> <p>② (전기·전자) 전기·전자설비의 설계·공사·유지·운용·점검, 전기·전자회로의 개발(응용), 전기·전자기기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의 근무경력</p> <p>③ (안전관리) 가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자 또는 가스기기·설비의 설계·제작·조립·설치·검사·보수·관리 등의 근무경력</p>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p>■ 기계과·기계공학과·기계설계공학과, 전기과·전기공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유사학과 범위: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p>						
비고	○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근무						

분류번호	12	채용분야	자동차 운전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경력 ②																			
학위 ③																			

- 주요업무**
- 소방차 운전 및 조작, 일상점검 및 정비 등
 - 각종 재난현장 활동을 위한 차량 상태 유지 및 행정 처리 전반에 관한 업무
 - 특수차량 운전(조작) 및 소방차운용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기타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각종 사무에 관한 처리

응시자격요건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면허증)**

제1종 대형운전면허

-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

-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 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 ③ 건설기계(화물적재공간이 있는 건설기계는 적재중량 12톤 이상)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이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④ 「도로교통법」[별표18] 비고 1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 변경 승인 전 또는 후의 기준을 적용하되 승차정원과 적재중량은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
- ⑤ 「도로교통법」[별표18] 비고 2에 따라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 용량 3천리터 초과 화물차로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
- ⑥ 「도로교통법」[별표18] 비고 3에 따라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견인하는 자동차로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로 적용
- ⑦ 총중량 10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함)
 - ※ 1종 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실무경력은 제외
 - ※ 도로교통법 개정('18.4.25.) 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함
 - ※ 군용 차량 운전경력자는 '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증별 적용기준을(참고자료 및 서식 참고)' 적용하되, 군 일반차량 운전경력자는 이 기준 적용

※ 제출서류: 군 운전경력증명서 및 운전경력확인서 (각 1부)

구분	군경력증명서	운전경력확인서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 발급
육군	국방부 또는 각 군 홈페이지	국방수송정보체계 (dtis.mil.kr)	해당 소속 부대
해군			해당 소속 부대
공군			해당 소속 부대
해병대			※09년 이전 전역자는 공군본부 역사기록단 해당 소속 부대

- ② **경력** ■ 해당없음

-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13	채용분야	자동차 정비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자동차 정비와 관리(정기검사, 보험계약, 안전사고 처리 등) 전반에 관한 업무 ○ 소방자동차 납품검수 및 차량구조원리 관련 전문교육 ○ 이동정비 차량 운영, 소방장비규격심의회 등 관리에 관한 업무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군 경력은 제외)</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rowspan="2">기본자격</td> <td>산업기사</td> <td rowspan="2">자동차정비</td> </tr> <tr> <td>기능사</td> </tr> <tr> <td rowspan="3">기타자격</td> <td>기술사</td> <td>차량</td> </tr> <tr> <td>기능장</td> <td rowspan="2">자동차정비</td> </tr> <tr> <td>기사</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기본자격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기타자격	기술사	차량	기능장	자동차정비	기사
	기본자격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기능사											
기타자격	기술사	차량									
	기능장	자동차정비									
	기사										
	<p>○ 경력요건: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p>▶ 인정 실무경력</p> <p>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 소방자동차의 제조 또는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p> <p>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21의2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자동차 정기검사, 판금, 도장 관련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p> <p>※ 자동차종합정비업은 관계 법령 개정 전 1급 공업사(1996년 이전)를 말함</p> </td> </tr> </table>	<p>▶ 인정 실무경력</p> <p>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 소방자동차의 제조 또는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p> <p>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21의2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자동차 정기검사, 판금, 도장 관련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p> <p>※ 자동차종합정비업은 관계 법령 개정 전 1급 공업사(1996년 이전)를 말함</p>									
<p>▶ 인정 실무경력</p> <p>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 소방자동차의 제조 또는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p> <p>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별표21의2 (2.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정비업무의 근무 경력(자동차 정기검사, 판금, 도장 관련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p> <p>※ 자동차종합정비업은 관계 법령 개정 전 1급 공업사(1996년 이전)를 말함</p>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14	채용분야	정보통신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	◎		◎		◎	◎	◎		◎		◎
경력 ②																			
학위 ③																			

주요 업무

- 지휘센터 유·무선 통신장비 운영, 소방서 정보통신 업무
- 종합상황실 정보통신, 정보보호, 정보관리팀 배치
- 긴급구조시스템 유지관리, 각종 프로그래밍 개발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기본자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빅데이터 분석
기타자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

-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인정 실무경력

- ①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
- 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
- ③ 통신, 방송, 무선, 정보설비 구축·설계·운영
- ④ 정보보안 기획·관제·운영·분석 및 침해사고 대응

① 자격증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분류번호	15	채용분야	정보통신(전산)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경력 ②																			
학위 ③																			

주요업무

- 행정정보시스템 등 업무개발 및 유지보수
- 행정포털 및 연계시스템 관리
-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유출 사고 대응 등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u>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기본자격</td> <td>산업기사</td> <td>사무자동화, 정보처리</td> </tr> <tr> <td rowspan="2">기타자격</td> <td>기술사</td> <td>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td> </tr> <tr> <td>기사</td> <td>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p>○ 경력요건: <u>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p>▶ 인정 실무경력</p> <p>①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p> <p>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p> </td> </tr> </table>	기본자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자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p>▶ 인정 실무경력</p> <p>①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p> <p>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p>
	기본자격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자격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p>▶ 인정 실무경력</p> <p>① S/W개발(연구·운영)·D/B설계(연구·운영)</p> <p>②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DB, 스토리지, 보안장비) 구축·설계·운영</p>										
② 경력	■ 해당없음									
③ 학위	■ 해당없음									
비고	○ 정보화 전담부서에서 근무									

분류번호	16	채용분야	화학
시험절차	필기, 체력, 서류전형, 면접	임용예정직급	소방사
필기시험과목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용예정기관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자격증 ①	○			○		○		○						○					
경력 ②	○			○		○		○						○					
학위 ③																			

주요업무

- 화학사고 대응,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개발
- 화학사고 관련장비 및 차량운영
-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사고예방 및 훈련 지도
- 소방기관에서 부여하는 소방활동 및 각종 사무(행정)처리 등에 관한 업무

응시자격요건

① 자격증	<p>■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u>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u></p> <p>○ 자격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기본자격</td> <td style="width: 20%;">산업기사</td> <td>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td> </tr> <tr> <td></td> <td>기술사</td> <td>화공</td> </tr> <tr> <td rowspan="2">기타자격</td> <td>기능장</td> <td>위험물</td> </tr> <tr> <td>기사</td> <td>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td> </tr> </table> <p>※ 임용예정직급에 따른 자격증 기준은 기본자격 소지자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며, 기타자격 소지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응시 가능</p> <p>○ 경력요건: 아래의 인정 실무경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p>▶ 인정 실무경력</p> <p>① 화학 공정 및 장비에 관한 연구·설계</p> <p>② 화학물질 취급 등의 안전관리</p> <p>③ 화학 관련 생산업체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관리</p> </div>	기본자격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기술사	화공	기타자격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본자격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기술사	화공										
기타자격	기능장	위험물										
	기사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② 경력	<p>■ 군 화생방분야 주특기 교육을 이수하고, 화생방부대 근무경력이 <u>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u></p>											
③ 학위	<p>■ 해당없음</p>											
비고												



소 방 청
National Fire Agency **119**

- 공고문은 119고시(<https://119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